

위험

## 부정수급 사이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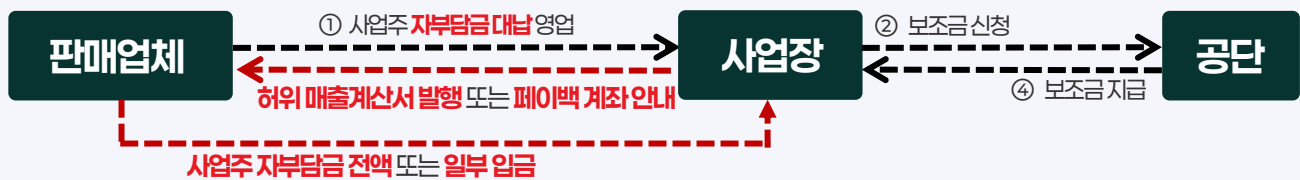
[2026-04호]

## 사업주 자부담금을 돌려받는 “페이백” 행위 다수 적발·경고

## [CASE] 부정사례

일부 판매업체가 “사업주 자부담금을 최소화”, “사업주 자부담금 0원” 등의 부정당 영업활동을 하고 지원사업장은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현금 지급 또는 계좌 이체방식으로 사업주 자부담금 전액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는 **페이백 행위 다수 적발**

※ '25년 제작·판매·대납업체 등 참여제한, 사업장 취소 및 환수(보조금 전액, 추가환수 5배), 수사 진행중



## [SCHEME] 부정수법

1. “사업주 자부담금 없음” 또는 추후 “되돌려 받을 수 있다”는 영업 행위에 동조, 판매업체와 결탁
2. 허위 매출이 발생한 것처럼 세금계산서 발행 또는 현금으로 자부담금을 페이백

→ 산업안전보건법 제158조 제2항 제1호(거짓·부정) → “**범죄**” 행위

## [RISK] 행정처분

- (환수) 지급된 보조금 전액 및 이자 환수
- (추가환수) 지급된 보조금의 5배
- (참여제한) 향후 5년간 공단 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
- (형사고발) 보조금 편취를 위한 고의성 및 기망 행위 시 형법 제347조(사기) 및 공공재정환수법 제28조의2에 따라 형사고발 및 처벌 가능

## &lt;부정수급 신고방법&gt;

- 산업안전포털 홈페이지 (<https://portal.kosha.or.kr/>)

고객센터



민원질의하기



부정행위신고

